대전광역시 대덕구

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관(부서)의 장	
람		





http://www.daedeok.go.kr

제2018-49호 2018. 6. 12.(화)

차 례

입법예고(2)

7					
공					
람					

발행: 대전광역시 대덕구 / 편집: 기획감시실(약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(오정동) ☎ 608-6603)

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」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6월 12일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- 1. 자치법규명 : 「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」
- 2.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

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, 과태료 부과· 징수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 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이 설치·운영하는 공중화장실을 관리대상으로 하여 유지·관리 책임부서 지정을 명확하게 규정함(안 제10조).
- 나.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방화장실 지정 시설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).
- 다. 과태료 부과·징수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함(안 제18조).

4. 의견제출

- 가.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(참조: 환경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의견제출 사항
 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 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 전화번호
- 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34443 /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(오정동)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환경과(전화 : 042-608-6854, FAX : 042-608-3834, E-Mail : alrud44@korea.kr)
- 라. 의견제출 방법: 서면, 전화, FAX, 컴퓨터통신, 직접방문 등

5. 그 밖의 사항

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환경과 담당자 이미경 (전화: 042-608-6854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"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·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"를 "구청장이 설치·운영하는 공중화장실을 효율적으로 유지·관리하기 위하여"로 한다.

제1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하여 줄 것을 요 청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규모에 관계없이 개방화장실 로 지정할 수 있다.

제18조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유지·관리 책임부서 지정) <u>공</u>	제10조(유지·관리 책임부서 지정) <u>구</u>
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	<u>청장이 설치·운영하는 공중화장실</u>
으로 유지·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시	을 효율적으로 유지·관리하기 위하
<u>설의</u> 화장실별 유지·관리 책임부서	<u></u>
를 지정한다.	
제13조(개방화장실의 지정) ① 구청장	제13조(개방화장실의 지정)
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	
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	
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	
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	
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	
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. <단서 신	다만, 해당
<u>설></u>	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
	가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
	에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규모에
	관계없이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
	<u>있다.</u>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8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	<u><삭 제></u>
대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	
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	
<u>에 따른다.</u>	

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O 성 명:

O 생 년 월 일:

O 주 소:

O 연 락 처:

O 의 견:

조례안 내용	의	견	비고

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」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6월 12일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1. 자치법규명 : 「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시 행규칙」

2.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

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발굴된 정비대상 중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항을 수정 및 삭제하고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이동화장실의 설치·관리 기준에 대한 위임 조례 조문을 수정함(안 제6조).
- 나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(안 제1조부 터 안 제6조까지).
- 다. 관리대상 공중화장실과 근거 법령을 정비하여 유지·관리 책

임부서를 명확하게 정함(안 별표).

4. 의견제출

가.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(참조: 환경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 전화번호
- 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34443 /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(오정동)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환경과(전화 : 042-608-6854, FAX : 042-608-3834, E-Mail : alrud44@korea.kr)
- 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컴퓨터통신, 직접방문 등

5. 그 밖의 사항

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환경과 담당자 이미경 (전화: 042-608-6854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-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명 "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"을 "대 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"으로 한다.
- 제1조 중 "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(이하"조례" 이라 한다)"를 "「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 례」"로 한다.
-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"를 "「대전광역시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8조에 따라"로, "각호"를 "각 호"로 한다.
-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9조의 규정에 의거"를 "제9조에 따라"로, "각호"를 "각 호"로 한다.
-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- 제4조(유지·관리 책임부서 지정) 조례 제10조에 따른 해당 시설의 화장실별 유지·관리 책임부서는 "별표"와 같다.
- 제5조 중 "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"을 "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"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16조에 따라"로, "각호"를 "각 호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다.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공중화장실 유지·관리 책임부서(제4조 관련)

부 서 명	적 용 시 설
문화체육과	가.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나.「관광진흥법」제2조에 따른 관광지·관광단지
경제과	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2조 및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
공원녹지과	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
교통과	가. 「주차장법」제2조에 따른 주차장 나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
환경과	그 밖에 다른 실·과에 속하지 않는 공중화장실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
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	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				
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	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				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<u>대전광역</u>	제1조(목적) 「 <u>대전광역시</u>				
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	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				
관리조례(이하"조례"이라 한다)	<u>리 조례</u> 」				
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					
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				
제2조(편의용품의 비치·제공)	제2조(편의용품의 비치·제공)				
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	「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				
중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	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」(이				
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	하 "조례"라 한다) 제8조에 따				
여 화장실에 다음 <u>각호</u> 의 편의	<u>라</u> <u>각 호</u>				
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					
다. 다만,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					
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					
예외로 할 수 있다.				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				
제3조(공중화장실의 유지·관리) 조	제3조(공중화장실의 유지·관리) -				
례 <u>제9조의 규정에 의거</u> 공중	- <u>제9조에 따라</u>				
화장실을 설치・관리하는 자는					
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					
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					
<u>각호</u> 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.	<u>각 호</u>		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		
제4조(유지·관리 책임부서 지	제4조(유지·관리 책임부서 지				
정)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	정) 조례 제10조에 따른 해당				

고 위생적으로 유지·관리하기 위하여 해당시설의 화장실별 유지·관리 책임부서는 "별표" 와 같이 한다.

한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 시설의 화장실별 유지·관리 책 임부서는 "별표"와 같다.

제5조(관리카드의 비치) 공중화 저 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**별** 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카 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·관리 및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.

제5조(관리카드의 비치)	
	<u>별</u>
지 제1호서식에 따른	

제6조(이동화장실의 설치·관리) 제6조(이동화장실의 설치·관리)

①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 준은 다음 **각호**와 같다.

1. ~ 4. (생 략)

②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 │ 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이동화 음 각호와 같다.

1. ~ 4. (생 략)

③ (생 략)

- ① -----제16조에 따라
- ----- 각 호----.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장실의 관리기준을 다음 각 호 와 같다.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③ (현행과 같음)

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O 성 명:

O 생 년 월 일:

O 주 소:

O 연 락 처:

O 의 견:

규칙안 내용	٤	의	견	비고